

의안번호	2210537
의 퇴 인	조지연 의원
회 답 일	2025. 5. 19.
추 계 번호	25F28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85.4억 원, 2029년 199.7억 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577.5억 원(연평균 192.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9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4)	185.4	192.4	199.7	577.5	192.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등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공제율 25%로 상향조정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4년 신고기준 공제실적 추정치가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소득세 공제액은 2024년 신고연도 기준 실적을 사용하고, 법인세 공제액은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4년 전망치를 사용
 -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거나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와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발생한 경우는 그 임금증가분에 대하여 기업 규모별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개정연혁)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12.23. 신설된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발생한 기업 및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됨
 - 2015.12.15. 일부개정: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2016.12.20.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 2017.12.19.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 20%로 상향조정
 - 2020.12.29. 일부개정: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로 대상을 제한
- (감면실적) 2019~2023년 신고기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19년 123.6억 원에서 2023년 226.9억 원으로 증가

[표 2]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20.2	36.1	42.5	53.4	66.9
법인세	중소기업	46.3	47.6	38.2	52.9	102.6
	중견기업	57.1	25.4	31.5	55.0	57.4
	소계	103.4	73.0	69.7	107.9	160.0
합계		123.6	109.1	112.2	161.3	226.9

자료: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2024년 신고기준 공제실적을 추정 한 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2024년 신고기준 소득세 공제액은 실적치를 사용하고, 법인세 공제액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4년 전망치를 사용
 - 소득세 실적은 개인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이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은 3.8%로, 귀속연도 기준으로 공제액은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표 3]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 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명목임금 상승률 ¹⁾		2.5	2.9	3.2	3.9	3.8	3.8
소득세		44.1	45.4	46.9	60.9	63.2	65.6
법인세	중소기업	55.4	57.0	58.8	76.4	79.3	82.3
	중견기업	43.6	44.9	46.3	48.1	49.9	51.8
	소계	99.0 ²⁾	101.9	105.1	124.5	129.2	134.1
합계		143.1	147.3	152.0	185.4	192.4	199.7

주: 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NABO 경제전망 (2025.3.)」 및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2024.10.)」

2)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85.4억 원, 2029년 199.7억 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577.5억 원(연평균 192.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9년까지 발생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4)	185.4	192.4	199.7	577.5	192.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